1 사업 개요

#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

도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발전,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『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은 신청 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7. 13.

#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

| □ 사 업 명: 202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□ 모집규모: 도내 소재 사업장 최대 64개사 모집(청년혁신가 64명 모집)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모집대상: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지원기관(단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O (사회적경제기업)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 등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(지원기관·단체) 도내 사회적경제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(단체)*지자체 소속 제외                  |
| □ 지원내용: 인건비(매월 200만원/인)·교통비(매월 10만원/인) 지원 <sup>*입시일 기준 2년</sup> |
| ※ 매월 인건비의 10% 및 4대 사회보험료는 사업장 자체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사업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청년에 대한 구인수요에 대응하고 취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계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

# 신청 자격 및 준수 사항

## □ 신청 자격

| 구분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회적경제조직<br>/단체(기관) | <ul> <li>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영업 중인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협동조합, 사회적경제 지원기관/단체</li> <li>도내 사회적경제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(단체)</li> <li>※ 지자체 소속 제외</li> <li>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</li> <li>※ 협동조합, 단체(기관)은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경제 지원 실적 증빙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 제한 사항           | <ul> <li>자본잠식상태, 재무구조 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</li> <li>국가 및 자치단체</li> <li>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</li> <li>고용의사를 밝인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</li> <li>※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한정</li> <li>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`22년 신규유형간 중복* 참여 배제</li> <li>※ 다만, `21년 기존유형과 `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</li> <li>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</li> <li>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·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</li> <li>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, 해당 사업장은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(사업장 귀책여부는 지자체장 판단)</li> </ul> |

## □ 지원내용

- (1~2년차)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+ 역량 강화 교육 지원
  - 지역 내 기업 등 채용 연계, 1인당 연 2,400만원\* 수준의 인건비 지원
    - ※ 임금의 하한 기준이며,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장이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 형평성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.
- O (3년차)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 (전환)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·창업(3개월 이내)하여 정착\*할 경우,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(최대 1년)
  - ※ 3년차 정착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거주(전입) 정착 충족 필요

- 지방자치단체(사업주체)가 해당 청년에게 1,000만원\*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※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**중복지원 불가**
- O 2년차 참여청년에 대해, 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른 <u>임금 인상 적용 장려</u>

#### □ 준수 사항

- 청년-기업-지원기관-지자체 4자 협약을 통해 참여 사업장에 계속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\* 인정
  - \*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,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,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
- O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,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 자체 부담
- O 청년혁신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, 네트워크 등의 모든 활동은 <u>공가</u> 처리 대상으로 사업장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

# 4 추진 일정 및 선정 기준

#### □ 일정



### O 세부 진행 일정

- 신청접수: 청년혁신가 홈페이지(http://청년혁신가.kr) 접수
- 서류검토: 제출 서류 검토 후 필요 시, 보완 요청 등
- 회계평가: 회계 전문 법인을 통해 제출 서류 분석 및 평가(정량평가)
- 현장실사: 기업 내 근무환경 및 청년혁신가 활용 계획 인터뷰 등
- 최종평가: 제출 서류 및 현장 실사 수행일지를 토대로 평가**(정성평가),** <u>정량평가</u>와 <u>정성평가</u> 점수를 합산 및 <u>**감점사항**</u>을 적용하여 최종 검토 후, 참여 사업장 선정 및 적합 인원 결정

※최종평가간 필요 시, 전화 연결을 통해 추가 질문 실시

- 선정 발표: 청년혁신가 홈페이지(http://청년혁신가.kr) 공지

#### □ 선정 기준

- 청년이 주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과업을 제시하고 보장
-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및 전담 인력(멘토) 보유
- 사업 종료 후 참여자 고용 승계 및 지역 일자리 연계를 지원
- 사업개시일 기준 정부 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 등 우대
- 사업 참여를 위해 임의적인 해고 해직이 발생한 사업장 참여 제외

#### O 참여 기업 선정 방법 및 평가 항목

- 참여 기업 선정 방법: 평가 결과 고득점순 선정
  - 정량 평가(40점) + 정성 평가(60점) + 감점 사항(0~-20점)

※ 평가 위원 과반수가 부정적 의견 또는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

- 평가 항목

| 구분    |            | 평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정량    | 경영 안정성     | 향후 사업 지속 운영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| 20점 |
|       | 재정 우수성     | 기업의 재무 건전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점 |
| 평가    | 인력 활용 가능성  | 경영·재정 상황을 토대로 한 인력 활용 가능성              | 10점 |
| 27.74 | 사업장 발전 가능성 |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, 향후 사업계획             | 20점 |
| 정성 명가 | 사회적 가치 창출  |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, 사회적 환원을 위한 노력            | 20점 |
|       | 인력 활용 우수성  | 채용 인원 활용계획의 타당성, 정규직 채용여부,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| 20점 |
| 합계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#### - 감점 항목

|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판단 기준*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감점 |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<br>사업 참여 사업장 |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    | 5~0점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전 사업 참여중 6개월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| 5~0점   |
|    | 부정수급 이력                  |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有   | 참여배제   |
|    | 계속고용의지                   | 최근 1년이내 인원 감축 현황                 | 5~0점   |
|    | 기타 자치단체 판단               | 기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부적격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  | 5~0점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최근 고용원 감축, 자본상태 등)              | J 0' 🛱 |

\*시행지침에 의거한 판단기준

## □ 추후 일정

O 청년혁신가 모집 및 협약

′22. 8. 中

O 청년혁신가 기본교육\*

′22. 9. 中

<sup>\*</sup>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신규 참여 청년혁신가 대상 10시간이상 교육,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

## 5 근로 조건

- O "근로계약"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
- O "근로계약"에는 임금, 근로시간, 유급휴일, 휴게시간, 연차 유급휴가, 초과근로 수당, 근무장소와 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
- 특히, 임금에 관한 사항(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)은 서면으로 명시하고, 사업 투입 전 근로계약(근로자의 서명 날인)을 체결함으로써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
- O 휴일과 휴가 등은 「근로기준법」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및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근로계약서에 명시
- 사회적경제 사업장은 별첨 「사회적경제 청년활동을 위한 표준근로 계약서」를 기초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마련 하되,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
- O 사업장은 활동근로계약 전에 청년혁신가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내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년혁신가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함
- 활동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혁신가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장과 청년혁신가 사이에 시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
- O 사업장은 활동근로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청년혁신가와 협약체결 자치단체(소속 시장·군수), 지원기관에 계약종료를 통지하여야 함
- O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,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 조건을 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
- O 임금은 월 1회 지급(매월 말일, 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)
  - 급여일자 변경의 경우, 관할 시장·군수와 협의 후 변경 가능
- O 4대 보험의 경우,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,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 부담(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)
-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,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
  - 다만, 기존유형(지역정착지원형,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)의 경우 사업개시

당시 시행지침의 연속성을 위해,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

O 시행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시행함

□ 지원 제외 일자리 유형

#### O 지원 제외 일자리 유형

- 전화·방문고객 단순상담
- 커피점·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·판매
- 건설·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
-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
-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

# 6 제출 서류 관련 사항

- □ 접수기간: 2022. 7. 13.(수) ~ 22.(금) 18:00 限
- □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http://청년혁신가.kr)
- □ 제출서류
  - 2022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장 참여 신청서\*<sup>[별침 1]</sup>
  - O 사회적경제사업장 인증(지정)서\*
    - ※협동조합은 협동조합(설립) 신고확인증 첨부
  - O 사업자(단체)등록증
  - O 사업장(기관/단체) 정관
  - O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
  - 최근 3개년 연도별 재무제표, 당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  - O 법인등기부등본
  - O 최근 2년간 사업 및 사회적경제 업무 추진 실적자료
- □ 보안 사항 및 비밀 준수
  -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, 결과는 개별 통보
  - O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·공개하지 않으며 비밀 준수